

도안 푸르지오 디아델

단지내 상가 명의변경(전매) 안내

▣ 명의변경(매매) 구비서류

양도인 (반드시 본인 내방)	☐ 단지내 상가 계약서 원본 ※ 최초 계약 시 수입인지 원본 2부(사업주체 발급 1부, 계약자 발급 1부) 및 분양권 전매계약 수입인지 1부
	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/ 매매계약서
	☐ 인감증명서(부동산매도용)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※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, 본인 발급분, 부동산 매도용
	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1)
	☐ 인감도장
양수인 (반드시 본인 내방)	☐ 인감증명서(일반용)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
	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1)
	☐ 인감도장
	※ 계약서 수령 시 양수인의 대리인 방문 가능(추가서류: 양수인/대리인 신분증, 인감도장(위임장 날인용))
법인으로 계약 시 대체 서류 (대표자 본인 방문)	☐ 사업자등록증
	☐ 법인 등기부등본
	☐ 법인 인감증명서 1부(매도시 매도용, 매수시 일반)
	☐ 법인 인감도장
	☐ 대표자 신분증(모바일 신분증 확인 불가)
	☐ 대표자 위임시 → 위임장 원본(법인인감 날인), 대표자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
	☐ 사용인감 제출 시 → 사용인감, 사용인감계(법인인감 날인)

▣ 유의사항

- 모든 서류는 반드시 1개월 이내 발급,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명의변경 구비서류 미비 시 명의변경 처리가 불가합니다.
- 분양대금 연체 및 압류 등 기타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 신청이 불가하며 분양금 연체세대는 미납금과 연체료 모두 납부하여야 전매가 가능합니다.
-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(매매)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대상(매건마다 발생)으로 양도/양수인 간 협의하여 인지세 납부 및 수입인지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양도소득세, 증여세 등 세금관련 문의는 세무서를 통해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▣ 매매절차

- ①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분양사무소 명의변경 예약(분양사무소 042-477-6565)
-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(양도/양수)
- ③ 매매계약서 검인 및 실거래 신고(유성구청 토지정보과 042-611-2291)
- ④ 수입인지 구매(우체국 및 취급은행)
- ⑤ 분양사무소 방문(양도인/양수인)
- ⑥ 분양사무소 방문하여 계약서 수령(양수인)